

물품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97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증서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증한 시범구매제품 확인서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납품은 우수조달공동상표와 시범구매제품으로 모두 등록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등록된 제품이 아닌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공고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공고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구매개요

- 입찰건명 : 석모 마을하수도(수중펌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품 명 : 수중펌프
- 수량·단위 : 불임(내역서) 참조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수의(총액), 다자간수의시담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 2026.12.20.
- 기초금액 : 금123,750,000원(부가세포함)
-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일원
- 공동도급 : 불가
- 하자담보 : 3년, 3%
- 납품조건 : 현장하차도
- 결격사항 : 선순위 낙찰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와 시범구매제품 확인서 상에 제시된 규격과 일치된 품목으로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후순위 낙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함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물품에 대한 규격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기를 바라며, 계약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연락처

- ①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 : [강화용진지사 공사감독](#)(☎ 032-930-2547)
- ②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지역본부 계약담당(☎ 031-250-3605)
-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주소 : 163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 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견적서제출기한 : 나라장터 화면참조
-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공고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기타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